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은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 374
----------	--------

제출년월일 : 2024. 1. 8.

발의자 : 황은화 의원 등 19명

1. 제안이유

-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에서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
- 대상을 “고려인 주민”에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으로 확대(안 제1조, 안 제3조 ~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4조 ~ 제17조)
- 재외동포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 | | |
|-------------|---------|
| 4. 현행조례 | : 붙임 2 |
| 5. 관계법령발췌서 | : 붙임 3 |
| 6. 예산수반사항 | : 붙임 4 |
| 7. 부서검토의견 | : 붙임 5 |
| 8. 조례안 예고결과 | : 의견 없음 |

- 조례안 예고 : 2023. 12. 21. ~ 2023. 12. 28.

【붙임 1】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고려인”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로 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을 “필요한 지원방안을”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려인 주민” 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재외동포 주민” 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재 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제3조의 제목 “(고려인의 지위)”를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지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고려인”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로 한다.

제4조 중 “고려인”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려인”을 각각 “고려인 등 재외동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고려인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려인”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고려인”을 각각 “고려인 등 재외동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어”를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한국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중 “고려인”을 각각 “고려인 등 재외동포”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은”을 “지원대상은”으로, “거주하는,” 을 “거주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고려인”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고려인과”를 “고려인 등 재외동포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고려인 주민 지원위원회의 설치)”를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려인”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고려인”을 각각 “고려인 등 재외동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4항”을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고려인”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고려인”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려인 주민 및 고려인 주민 가정”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고려인”을 각각 “고려인 등 재외동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을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려인”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로, “고려인문화센터”를 “고려인 등 재외동포 문화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고려인”을 각각 “고려인 등 재외동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고려인”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로 한다.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고려인”을 각각 “고려인 등 재외동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고려인”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황은화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6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u>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u>고려인</u>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u>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u>을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p>	<u>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u> <p><u>제1조(목적)</u> ----- <u>고려인 등 재외동포</u> ----- ----- ----- <u>필요한 지원방안을</u> ----- ----- -----.</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재외동포 주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재 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p><u>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u> <u>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u> <u>적을 취득한 사람</u></p>
제3조(<u>고려인의 지위</u>) <u>고려인</u>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p>제3조(<u>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지위</u>) <u>고려인</u> 등 <u>재외동포</u> ----- ----- ----- -----.</p>
제4조(<u>다른 법률과의 관계</u>) <u>고려인</u>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제4조(<u>다른 법률과의 관계</u>) <u>고려인</u> 등 <u>재외동포</u> ----- ----- ----- -----.</p>
제5조(<u>시장의 책무</u>)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고려인</u>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u>고려인</u>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p>제5조(<u>시장의 책무</u>) ① ----- ----- <u>고려인 등</u> <u>재외동포</u> ----- ----- ----- -----.</p> <p>② --- <u>고려인 등 재외동포</u> ----- ----- -----.</p>
제6조(<u>실태조사 등</u>) ① 시장은 <u>고려인</u>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u>고려인</u>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p>제6조(<u>실태조사 등</u>) ① --- <u>고려인</u> <u>등 재외동포</u> <u>주민 지원시책</u> ----- ----- -----.</p> <p>② --- <u>고려인 등 재외동포</u> ----- ----- -----.</p>

③ (생략)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등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고려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 홍보 등

4. 외국어 통역 · 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고려인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5. 고려인 주민을 위한 문화 · 체육행사

6. 고려인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7.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생략)

제8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① -----
고려인 등 재외동포 -----
-----.

1. 고려인 등 재외동포 -----

2.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한국어

3. 고려인 등 재외동포 -----

4. -----
고려인 등 재외동포 -----
----- 고려인 등 재외동포 -----

5. 고려인 등 재외동포 -----

6. 고려인 등 재외동포 -----

7. 고려인 등 재외동포 -----
-

8. --- 고려인 등 재외동포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
----- 거주하는

-----.

1. 고려인 주민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
과 그 자녀

제9조(고려인 주민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고려인 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2. (생략)

3.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교수·상공인 등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생략)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고려인 등 재외동포 --

2. ----- 고려인
등 재외동포와 --

제9조(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고려인 등 재외동포 -----
-----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고려인 등 재외동포 -----

--.

1. ~ 2. (현행과 같음)

3. 고려인 등 재외동포 -----

4. ----- 고려인 등 재외동포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

----.

⑥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고려인 주민 업무소관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려인 주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2. 고려인 주민 및 고려인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고려인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14조(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1. 고려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상담, 문화·체육 행사
2. 고려인 주민 자녀 교육·보육 지원 사업
3. 고려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연계

⑥ -----
----- 고려인 등 재외동포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
-----.

1. 고려인 등 재외동포 -----

2.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및 그 가정 -----
3. 고려인 등 재외동포 -----

4. 고려인 등 재외동포 -----

5. 고려인 등 재외동포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① --- 고려인 등 재외동포 -----
----- 고려인 등 재외동포 문화센터 -----
-----.

② (현행과 같음)

1. 고려인 등 재외동포 -----

2. 고려인 등 재외동포 -----

3. 고려인 등 재외동포 -----

4. 시민의 고려인 이해, 내·외국인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5.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5조(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생 략)

2.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생 략)

제17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생 략)

4. --- 고려인 등 재외동포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 고려인 등 재외동포 ---.

제16조(포상) ① --- 고려인 등 재외동포 ---

② --- 고려인 등 재외동포 ---.

1. (현행과 같음)

2. 고려인 등 재외동포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명예시민) ① --- 고려인 등 재외동포 ---.

② (현행과 같음)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9-374
------------	-------

제안년월일 : 2024년 1월 25일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 수정이유

- 착오 기재된 관련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문을 수정함.

□ 주요골자

-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 (안 제2조제2호)
-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를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로 수정
(안 제9조제5항)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본문 중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를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 45년 8월 15일까지 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 법」 제777조에 따 른 그 친족으로 현재 안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 합법적으 로 거주하고 있는 사 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p> <p>1. “고려인 주민”이 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 지의 시기에 농업이 민, 항일독립운동, 강 제동원 등으로 러시 아 및 구소련 지역으 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 재 안산시 (이하 ‘시’라 한다)에 합 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2. “재외동포 주민” 이란 <u>「재외동포의 출</u> <u>입과 법적 지위에 관</u> <u>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재 시에 합법적 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출생에 의하여 대 한민국의 국적을 보 유했던 사람(대한민</u></p>	<p>제2조(정의) ----- ----- -----.</p> <p>1. (개정안과 같음)</p> <p>2.----- --<u>「재외동포의 출</u> <u>입국과 법적 지위에</u> <u>관한 법률 시행령」</u> ----- ----- ----- ----- ----- ----- ----- -----. 가. (개정안과 같음)</p>

	<p>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p> <p>제9조(고려인 주민 지원 위원회의 설치) ①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u>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고려인 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교수·상공인 등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p>나. (개정안과 같음)</p> <p>제9조(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고려인 등 재외동포 ----- ----- “<u>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고려인 등 재외동포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고려인 등 재외동포 ----- ----- 4. -----고려인 등 재외동포 -- -----</p> <p>제9조(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p>
--	---	---

<p>부한 자</p> <p>④ (생 략)</p> <p>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8조제4항에도 <u>불구하고</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⑥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u>고려인</u> 주민 업무소관 과장이 된다.</p>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u>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 제8조제5항-- ----- -----. ----- ----- -----. ⑥ ----- ----- - <u>고려인 등 재외동포</u>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 ----- ----- ----- -- 「 <u>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 제8조제5항에 <u>따라</u> -- -----. ----- -----. ⑥ (개정안과 같음)
---	---	---